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1의정서 제2조에 대한 해설서

교육을 받을 권리

2024년 2월 29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2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일러두기	4
I. 일반 원칙	5
A. 제 1 의정서 제 2 조의 구조	5
B. 제 1 의정서 제 2 조의 의미 및 범위	5
C. 해석의 원칙	6
II. 교육을 받을 권리	7
A. 교육을 받을 권리의 원칙	7
B. 교육에 대한 접근 제한	8
1. 언어	8
2. 입학 기준 및 입학시험	8
a. 입학 기준	8
b. 입학 제한이 있는 의무적 입학시험	9
c. 입학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의 취소	9
3. 학비	9
4. 국적	10
5. 교육 증명서를 이용한 최소 연령 요건	10
6. 법적 문제	10
a. 교도소	10
b. 범죄 수사	11
c. 추방 및 퇴거 조치	11
7. 징계 제재	11
8. 건강	12
9. 해외 고등교육	12
C. 교육 접근 차별	13
1. 장애인	13
2. 행정상의 지위 및 국적	15
3. 출신 민족	15
4. 개인의 특성 또는 “상황”	16
III. 부모의 권리 존중	16
A. 범위	16
B. 면제 가능성	17
C.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	19
인용 판례 목록	20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拉斯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의정서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및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eda v. Poland* [GC], no. 43572/18, § 324, 2022년 3월 15일).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결은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I. 일반 원칙

제1의정서 제2조 – 교육을 받을 권리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교육 및 교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에 일치하는 교육 및 교수를 확보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HUDOC 주제어

교육을 받을 권리(P1-2) –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존중(P1-2) – 부모의 철학적 신념에 대한 존중(P1-2)

A. 제1의정서 제2조의 구조

- 제1의정서 제2조의 제1문은 교육을 받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2문은 부모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부모에게 보장한다.
- 제1의정서 제2조는 제1문이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며, 제2문에 명시된 권리는 교육에 대한 기본권에 부속된 권리이다(*Campbell and Cosans v. the United Kingdom*, 1982, § 40).

B. 제1의정서 제2조의 의미 및 범위

- 제1의정서 제2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특정 유형 또는 특정 수준의 교육을 국비로 설립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교육이라면 협약당사국은 그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표현¹이다(“[벨기에 교육에서 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의 특정 측면에 관한 사건](#)”(“벨기에 언어 사건”), 1968, “the Law” 부분 § 3). 따라서 국가는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거나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러한 영역은 각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 그러나 국가는 침해를 자제할 의무만 있고 제1의정서 제2조에서 보호하는 이 권리가 존중받도록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이 조항이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권리와 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관한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국가는 설립하거나 인가하기로 한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벨기에 언어 사건](#), “the Law” 부분 § 5; 또한 *Golder v. the United Kingdom*, 1975, § 38 준용하여 참조; *Fayed v. the United Kingdom*, 1994, § 65). 따라서 협약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재판소에 달려 있지만, 국가 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을 누릴 수 있다. 재판소는 부과된 제한으로 인해 권리의 본질이 손상되고 효력이 박탈될 정도로 권리가

1.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로 확인할 수 있다(특히 Doc. CM/WP VI (51) 7, p. 4, 및 AS/JA (3) 13, p. 4 참조). 1950년 8월 유럽평의회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적극적 양식(positive formula)”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명국들은 제 1 의정서 제 2 조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개인이 선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교육을 창조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조처하거나 사교육을 보조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듯하다.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제한은 관련자가 예측할 수 있고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Leyla Şahin v. Turkey* [GC], 2005, § 154).

6. 협약 제8조부터 제11조에 대한 입장과 달리, 허용되는 제한은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른 “정당한 목적”을 모두 포함하는 목록에 속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은 사용 수단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간 합리적인 비례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제1의정서 제2조와 양립할 수 있다(*Leyla Şahin v. Turkey* [GC], 2005, §§ 154 아래 참조).

7. 협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며, 제1의정서 제2조는 적어도 제2문에서 교육과 교수에 관하여 제9조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2007, § 84; *Lautsi and Others v. Italy* [GC], 2011, § 59; *Osmanoğlu and Kocabas v. Switzerland*, 2017, §§ 90–93).

C. 해석의 원칙

8.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증진에 필수 불가결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므로 제1의정서 제2조 제1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Leyla Şahin v. Turkey* [GC], 2005, § 137; *Timishev v. Russia*, 2005, § 64; *Çam v. Turkey*, 2016, § 52; *Velyo Velev v. Bulgaria*, 2014, § 33).

9. 제1의정서 제2조의 제1문과 제2문은 둘을 함께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모든 사람은 개인의 자율성 개념(*Enver Şahin v. Turkey*, 2018, § 7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정보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 자유”(*Kjeldsen, Busk Madsen and Pedersen v. Denmark*, 1976, § 52)가 포함된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받을”(*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2, § 143)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협약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특히 비추어 읽어야 한다(*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2007, § 84). 또한 제1의정서 제2조는 협약 제14조 및 차별 금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 제1의정서 제2조는 협약을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국제법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2, § 136). 재판소는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1948),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196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ibid.*, §§ 77–81), 유럽 지역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협약(*Leyla Şahin v. Turkey* [GC], 2005, § 66),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Timishev v. Russia*, 2005, § 64),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Çam v. Turkey*, 2016, § 53), 유럽사회헌장 개정본(*Ponomaryovi v. Bulgaria*, 2011, §§ 34–35) 같은 국제 조약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제1의정서 제2조에 있는 개념을 해석하였다.

II. 교육을 받을 권리

제1의정서 제2조(교육을 받을 권리) 첫 번째 문장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

HUDOC 주제어

교육을 받을 권리(P1-2)

A. 교육을 받을 권리의 원칙

11.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해당 시점에 존재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접근권([벨기에 언어 사건](#), “the Law” 부분 § 4), 지식 전수 및 지적 발달(*Campbell and Cosans v. the United Kingdom*, 1982, § 33)뿐만 아니라 받은 교육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 즉, 각국에서 시행 중인 규칙에 따라 자격증 등의 수단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이수한 학업에 대한 공식 인정을 받을 권리([벨기에 언어 사건](#), “the Law” 부분 §§ 3-5)를 포괄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수학한 전문 의료 과정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제1의정서 제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Kök v. Turkey*, 2006, § 60).

12. 제1의정서 제2조는 초등학교 교육(*Sulak v. Turkey*, 위원회 결정, 1996)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Cyprus v. Turkey* [GC], 2001, § 278), 고등교육(*Leyla Sahin v. Turkey* [GC], 2005, § 141; *Mürsel Eren v. Turkey*, 2006, § 41) 및 박사 과정이 포함된 전문 과정(*Telek v. Türkiye*, 2023, §§ 133-134)도 포괄한다. 초·중등 교육은 아동의 개별 발달과 미래의 성공을 근본적으로 좌우한다(*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2, § 144). 제1의정서 제2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다(*Velyo Velev v. Bulgaria*, 2014).

13. 협약 제1의정서 제2조는 고등교육에 적용되므로,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국가는 모두 해당 교육기관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Leyla Sahin v. Turkey* [GC], 2005, §§ 136-137). 즉, 해당 시점에 존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제2조 제1문에 명시된 권리가 완성된다(*Mürsel Eren v. Turkey*, 2006, § 41; *Irfan Temel and Others v. Turkey*, 2009, § 39).

14. 나아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국가의 책임이다(*Kjeldsen, Busk Madsen and Pedersen v. Denmark*, 1976). 또한 국가는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민간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의정서 제2조는 사립학교를 개설하고 운영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국가가 특정 형태의 교수(教授)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Verein Gemeinsam Lernen v. Austria* (dec.), 1995). 또한, 협약 제1의정서 제2조 제2문이 아동의 사립학교 입학을 강제한다고 할 수도 없다(*Sanlısoy v. Turkey* (dec.), 2016). 마지막으로, 국가는 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가 있다(*O'Keeffe v. Ireland* [GC], 2014, §§ 144-152).

15. 제1의정서 제2조 제1문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규제를 요구하며, 국가의 규제는 지역사회 및 개인의 필요와 자원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맞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해치거나 협약에 명시된 다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협약은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이익 보호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 간 공정한 균형을 수반한다([벨기에 언어 사건](#), “the Law” 부분 § 5).

B. 교육에 대한 접근 제한

16. 제1의정서 제2조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다만, 권리의 본질을 손상시키고 그 효력을 박탈할 정도로 제한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자가 예측가능한 제한이어야 하고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제한이어야 하지만, 제1의정서 제2조에 맞는 정당한 목적이란 무엇인지 모두 밝히는 목록은 없다(*Leyla Sahin v. Turkey*, § 154).

1. 언어

17. 제1의정서 제2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려면 어떤 언어로 교육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수혜자에게 단일 자국어 또는 복수의 자국어 중 하나로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뜻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벨기에 언어 사건*, “the Law” 부분 § 3)

18. *Cyprus v. Turkey* [GC], 2001 (§§ 277–280) 사건에서 튀르키예-사이프러스 당국이 초등학교에서 그리스어로 중등 교육을 제공하다가 폐지한 것은 제1의정서 제2조 위반으로, 이는 북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인이 적절한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결정되었다.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2 사건에서는 분리주의 당국의 언어 정책으로 학교가 강제 폐쇄되고 등교가 재개된 후에는 괴롭힘을 가하는 조치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19. 그러나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2조에 명시된 권리는 특정 언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어, 즉, 공용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단하였다(*Valiullina and Others v. Latvia*, 2023, § 135). 따라서 *Valiullina and Others v. Latvia*, 2023 (§ 135) 사건의 경우 라트비아어가 유일한 공용어이므로, 제1의정서 제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은 라트비아 공립 학교에서 교육 언어로서 러시아어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청구인들은 러시아어 제한이 교육을 받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소는 공립 학교에서 라트비아어로 가르치는 과목의 비율을 늘리고 러시아어 사용을 줄인 입법 개혁이 제1의정서 제2조와 더불어 협약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Valiullina and Others v. Latvia*, 2023, §§ 145–215).

20. 대학 당국에 쿠르드어로 진행하는 선택 과목 도입을 요구한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퇴학 처리한 것도 위반에 해당한다(*İrfan Temel and Others v. Turkey*, 2009; *Cölgecen and Others v. Turkey*, 2017; 및 아래 “징계 제재” 참조).

2. 입학 기준 및 입학시험

21. 국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Campbell and Cosans v. the United Kingdom*, 1982).

22. 그러나 재판소는 교육에 대한 접근권과 특정 제한 간 비례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a. 입학 기준

23. 국가는 교육기관에 입학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에 관한 규칙을 예측할 수도 없고 과도기적 시정 조치도 없이 변경하면 제1의정서 제2조와 더불어 협약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Altinay v. Turkey*, 2013, §§ 56–61). 따라서 고등교육 접근에 관한 규정 변경을 청구인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했고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정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란이 된 대우의 차이는 청구인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제한하여 권리의 효력을 박탈하고 따라서 추구하는 목적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지 않았다.

24. 국가는 고등 수준의 학업 수학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입학시키기 위한 후보자 선발 규칙을 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관련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Kılıç v. Turkey* (dec.), 2019, §§ 26–32 사건에서 중등학교에서 공부한 과목과 예상되는 대학 과정 간 일치성에 비중을 둔 대학 입학 제도는 학생의 전공 분야를 강조하였고 대학 학업 수준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장 소지자는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응시자와 동등하게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고 그 결과도 동일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선발 기준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고등교육 접근권을 실제로 빼앗기지는 않았다.

25. 제공된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으려면 필요한 학문적 수준에 도달한 학생 지원자만 학업에 접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부인이라고 간주되지 않았다(*X.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0).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학년 시험에 불합격하였고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모든 개별 지도 시간에 불참하는 중이었다. 대학은 해당 남학생이 1학년 과정을 반복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지도 않았다.

26. 또한, 국가는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최대 기간을 정할 권리가 있다. *X. v. Austria*, 1973 사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의과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자 더 이상 의대에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b. 입학 제한이 있는 의무적 입학시험

27. 의과대학과 치과대학(공립 및 사립) 진학에 입학 정원 제한(numerus clausus)이 있는 입학시험을 부과하는 법률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Tarantino and Others v. Italy*, 2013). 입학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적절한 시험으로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대학에서 최소한의 적절한 교육 수준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비례성 있는 조치였다. 입학 제한 제도의 경우, 특정 직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대학의 역량 및 자원을 고려하면 그 존재가 정당화되었다.

c. 입학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의 무효 선언

28. 대학 입학시험에서 응시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그 전 몇 년간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선언하여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위반되었다(*Mürsel Eren v. Turkey*, 2006,). 취소 결정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자의적이었다.

3. 학비

29. 국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육 분야에서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공공 서비스 사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줄여서는 안 된다. 중등 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인정 범위는 교육 수준에 따라 증가하며, 해당 교육이 관련자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에는 반비례한다. 개인이 성장 발달하여 사회인이나 직업인으로 자리잡는 데 중등교육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협약 제14조를 위반하는 차별적인 제도가 탄생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Ponomaryovi v. Bulgaria*, 2011).

4. 국적

30. 교육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Foreign Student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7, § 4). 보장된 권리는 주로 초등 교육에 관한 것이므로 외국인 학생의 퇴학은 원칙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31. 재판소는 대단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만 오로지 국적만을 근거로 한 대우의 차이가 협약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협약이 직접 보호하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득이 되는 매우 구체적인 성격의 공공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민주적 차원에서 소수집단 통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Ponomaryovi v. Bulgaria*, 2011).

32. 이외에도 *Timishev v. Russia*, 2005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녀들은 2년간 다니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등교가 거절된 실제 사유는 청구인이 이민자 카드를 반납하면서 해당 마을에서의 주민 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법률은 자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모의 거주지 등록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자녀가 국내법으로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판단하였다.

5. 교육 증명서를 이용한 최소 연령 요건

33. 재판소는 코란 수업에 등록하려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Ciftçi v. Turkey* (dec.), 2004). 문제가 된 제한은 코란 수업에서 종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 초등학교 교육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적 요건은 실제로 호기심도 많은데다 코란 수업에 영향을 받기 쉬운 나이의 미성년자에게 교리가 주입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6. 법적 문제

a. 교도소

34. 합법적으로 수용된 수형자는 자유권을 제외하고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계속해서 모두 향유한다. 즉, 수형자는 제1의정서 제2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형자가 기존 교도소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Velyo Velev v. Bulgaria*, 2014). 그러나 수형자는 제1의정서 제2조에 의지하여 국가에 특정 유형의 교육 또는 훈련을 교도소에 편성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35. 청구인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소(在所)된 동안 대학 과정을 이어 나가지 못한 것은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다(*Georgiou v. Greece* (dec.), 2000; *Durmaz and Others v. Turkey* (dec.), 2001; *Arslan v. Turkey* (dec.), 2006). 또한 재판소는 수감 중 중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닐 수 없다는 청구에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Epistatu v. Romania*, 2013). 또한 교도소 학교에서 수업 듣기를 중단한 청구인은 교정당국의 입학 거부나 징계 감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중단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Koureas and Others v. Greece*, 2018, §§ 97–99).

36. 수형자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다면 제1의정서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Mehmet Reşit Arslan and Orhan Bingöl v. Turkey*, 2019). 튀르키예 법원은 청구인들의 테러 유죄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공공질서의 책무 사이에서 공정하게 균형을 잡지 못하였다.

37. *Uzun v. Turkey* (dec.), 2020, §§ 28–37 사건에서 테러 혐의로 재판 전 구금 중인 사람은 대학에서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한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필요하고 비례성 있는 조치였다. 투르키예 법원은 해당 조치가 헌법 및 협약 판례로 정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

b. 범죄 수사

38. *Ali v. the United Kingdom*,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비례성 원칙이 지켜진다면 학교 내 사건에 대한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등학교 학생의 등교를 장기간 금지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범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만 등교가 금지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등교 금지 기간에 대체 교육을 받았고, 대체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을 전부 포괄하지는 않았지만, 등교 금지 기간이 범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무 취학 연령의 학생이 한 학교로 등교가 영구적으로 금지되고 이후 다른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c. 추방 및 퇴거 조치

39. 강제퇴거로 인한 교육 중단은 제1의정서 제2조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추방 조치로 특정 국가에서 교육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 그 조치 자체가 해당 조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간섭한다고 볼 수 없다(*Sorabjee v. the United Kingdom*, 1995; *Jaramillo v. the United Kingdom*, 1995; *Dabhi v. the United Kingdom*, 1997 위원회 결정 참조).

40. 로마족 청구인의 손자가 자택 옆 학교에 재학 중인데 청구인이 택지에서 퇴거 조치된 것은 이 제1의정서 제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해당 계획 조치로 인해 손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제소하였지만 증명하지 못하였다(*Lee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7. 징계 제재

41. 학교 내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협약상의 권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Çölgeçen and Others v. Turkey*, 2017, §§ 50–51).

42.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기(*Sulak v. Turkey*, 위원회 결정, 1996) 또는 일탈 행위(*Whitma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9)를 이유로 교육 기관에서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금지하지 않는다.

43. *Çölgeçen and Others v. Turkey*, 2017 사건에서 이스탄불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쿠르드계 투르키예 학생들은 쿠르드어로 된 강의를 요청하다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러한 징계 제재는 몇 달 후 청구인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되었고,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학과로 복학하여 놓쳤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졸업하였다. 국적재판관(national judge)들은 청구인들이 청원서에 담은 의견이나 청원 형식이 징계 제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무효로 하였다. 재판소는 학생들이 순전히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제1의정서 제2조(§§ 55–56) 위반을 판단하기에 앞서 협약 제10조에 따라 해당 정황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4. 재판소는 “의미 있는 불이익”(협약 제35조 제3항 제b호)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의 정학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였다(*C.P. v. the United Kingdom*, 2016 결정에서 문제로 삼은 구체적인 상황 참조).

8. 건강

45. 한센병으로 오진 받아 퇴학당한 아동의 재입학 자연은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제1의정서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Memlika v. Greece*, 2015). 아동과 교사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감염 위험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해야 하는 경우 당국은 공동체의 이익 보호와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된 개인의 이익을 서로 조정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46. 아동을 예방 접종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자녀는 어린이집 출입을 금한 것은 협약 제8조 위반을 수반하지 않는다(*Vavřič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21). 따라서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라 청구서의 별도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9. 해외 고등교육

47. 제1의정서 제2조 제1문에서 회원국은 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Telek v. Türkiye*, 2023, § 137). 이 의무는 그러한 시설에 무조건 다닐 수 있는 권리와는 다르다.

48. *Telek v. Türkiye*, 2023 사건에서 다수의 학자는 국가 비상사태에 채택된 법령에 따라 상당 기간 불법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는 여권 박탈로 인해 (입학했던) 외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이어 나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1의정서 제2조 (§§ 149–154) 위반을 수반한다.

C. 교육 접근 차별

49. 국가가 제1의정서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대우에 차이를 두는 경우, 협약 제14조에 따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협약 제14조 – 차별 금지

“본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HUDOC 주제어

차별(14) – 비교 상황(14)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14)

50. 대우의 차이가 차별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벨기에 언어 사건*에서 재판소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에 거주하는 네덜란드어가 모국어인 아동은 네덜란드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에 거주하는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아동은 프랑스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문제를 다루었다.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가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의 이익을 위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언어만 관련된 고려 사항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the Law” 부분 § 32). 따라서 협약 제14조와 더불어 제1의정서 제2조의 위반이었다.

51. 협약 제14조를 준수하려면 정당한 목적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우의 차이는 비례성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변경된 대학 입학 제도를 검토한 결과 고등교육의 품질을 빠르게 개선하려는 목적이었음에도 제1의정서 제2조와 더불어 제1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변경된 제도의 적용이 예측불가능하고 시정 조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이행이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다(*Altinay v. Turkey*, 2013, § 60).

1. 장애인

52. 장애인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재판소에 제기된 적이 거의 없다. 제1의정서 제2조를 단독으로 놓고 보면, 이전 위원회는 장애 아동이 가능하면 같은 또래의 다른 아동과 함께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모든 장애 아동에게 적용될 수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장애 아동의 이익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해당 당국에 폭넓은 재량이 있어야 했다. 재판소는 최근 제14조 및 제1의정서 제2조가 결합된 사건에서 장애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배치할 자원을 정의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가 당국은 자국의 이해당사자와 정기적으로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 법원보다는 해당하는 상황 및 관련된 현지의 요구에 대해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Çam v. Turkey*, 2016, § 66). 다만 국가 당국은 가장 취약한 집단을 위해 결정한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ibid.*, § 67; *Enver Şahin v. Turkey*, 2018, § 68).

53. 위원회에 따르면, 제1의정서 제2조 제2문은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을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대신 일반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라고 하지 않았다(*Graeme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0). 마찬가지로 제2조의 제2문은 심각한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특수 학교에 자리를 확보하는 대신 필요한 추가 교원의 비용을 들이거나 다른 학생을 희생하면서 일반 학교에 배치하라고 하지 않았다(*Klerks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95). 또한 공공 자금과 자원 사용에서도 근이영양증이 있는 학생을 위해 초등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1의정서 제2조를 단독으로 또는 협약 제14조와 더불어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내렸다(*McIntyre v. the United Kingdom*, 1998). 같은 맥락에서, 단 한 곳의 학교가 적절한 시설이 없어서 장애 아동 입학을 거부한다고 하여 국가가 협약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정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Kalkanli v. Turkey* (dec.), 2009).

54. *Sanlisoy v. Turkey* (dec.), 2016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폐증을 이유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차별적인 위반이 있었다고 청구하였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상황을 검토한 재판소는 자폐증을 이유로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거부되거나 협약 제14조와 더불어 제1의정서 제2조 하에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를 각하하였다. 일반학교 입학이 거부되어 특수 교육 기관으로 보내진 자폐 아동에 관한 *Dupin v. France* (dec.), 2018 사건에서도 결론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자폐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특수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제1의정서 제2조와 더불어 협약 제14조 위반이었다(*G.L. v. Italy*, 2020). 국가 당국은 해당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거나 학교 행정에 비례성에 어긋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다른 학생이 누리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해법을 찾지 않았다.

55. 재판소는 국제법과 유럽법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달성해야 할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합의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의 국제 협약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행사에서 보편성과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포용적 교육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Çam v. Turkey*, 2016, § 64; *Sanlisoy v. Turkey* (dec.), 2016, § 59). 협약 제14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비례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으로 이해되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수단의 요건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제14조는 장애로 인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용이나 현실적 여건과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조정을 하라고는 요구하지 않는다(*T.H. v. Bulgaria*, 2023, § 122). 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정당화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불평등 시정에 기여한다(*Çam v. Turkey*, 2016, § 65; *Sanlisoy v. Turkey* (dec.), 2016, § 60). 물질적 형태 또는 그 외 다른 성격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이다(*Çam v. Turkey*, 2016, § 66; *Enver Şahin v. Turkey*, 2018, § 68).

56. *Çam v. Turkey*, 2016 사건에서 시각장애인의 음악 아카데미 시험에 합격했지만, 등록이 거부된 것은 제1의정서 제2조와 함께 제14조 위반이었다. 관련 국내 당국은 청구인의 필요를 파악하거나 시각 장애가 어떻게 음악 교육을 방해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시각 장애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교육적 필요에 맞는 특별한 편의 제공을 고려한 적도 없었다.

57. *Enver Şahin v. Turkey*, 2018 사건은 재학 중 하반신이 마비된 청구인의 대학 구내 접근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대학 당국이 단순히 청구인의 등교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필요한 조정 작업을 단기간에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에서 국가 당국에 주어진 인정 범위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법이 부과하는 일련의 개발 작업 완료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등교 문제가 보류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4-65). 활동 보조인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재판소는 청구인의 실제 상황에 대한 개별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청구인이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생활할 필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제8조에 보장된 개인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0–72). 따라서 제1의정서 제2조와 더불어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58. *T.H. v. Bulgaria*, 2023 사건에서 운동과다 및 학습 능력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 초등학교의 대응은 제1의정서 제2조(§§ 118–123)와 더불어 협약 제1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교장과 청구인의 담임교사가 학생의 장애와 그에 따른 특별한 요구사항을 외면했다고 할 수 없었다. 관련된 조정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안전, 웰빙, 효과적인 교육 등 급우들의 이익과 청구인의 이익 사이에서 까다로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행정상의 지위 및 국적

59. *Ponomaryovi v. Bulgaria*,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어머니와 함께 벨기에에 거주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학생 두 명의 사례를 다루었다. 불가리아는 중등교육이 무료이지만, 이 두 학생은 행정상의 지위를 이유로 학비가 부과되었다. 청구인들은 불법으로 입국하여 무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청구인들은 본의는 아니더라도 영주권 없는 외국인 신분이었지만 불가리아 당국은 청구인들이 불가리아에 머무르는 것에 실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추방할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불가리아 당국은 이러한 청구인들의 상황을 참작하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법률에는 학비 면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중등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두 학생이 국적과 이민 신분을 이유로 중등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제1의정서 제2조에 비추어 협약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출신 민족

60. 재판소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로마족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여러 사례에서 다루었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205). 혐난한 과거와 끊임없는 추방으로 로마족은 불우하고 취약한 소수민족이라는 구체적인 유형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는 교육 영역까지 확대된다(*ibid.*, § 182).

61. 로마족 공동체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불평등을 시정하려면 국가는 로마족의 필요 사항에 특별히 주의하고 관할 당국은 필요한 행정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로마족 아동의 등록을 촉진하는 등 대우에 차이가 있어야 했다(*Sampanis and Others v. Greece*, 2008, § 86).

62. 그러나 로마족 아동의 학교 등록만으로는 제1의정서 제2조와 더불어 협약 제14조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주로 유럽인종차별철폐위원회(ECRI) 보고서에 의거하였다(*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학교에 등록하는 조건 또한 만족스러워야 한다. 재판소는 특수학교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국가의 결정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였다(*ibid.*, § 198). 마찬가지로, 언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없는 아동을 별도의 학급에 임시 배치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57). 다만, 로마족 아동이 특수학교에 잘못 배치되는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유구하게 발생하였다(*Horváth and Kiss v. Hungary*, 2013, § 115). 따라서 로마족 아동을 위해 학교 교육을 조정할 때는 국가가 이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207;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2008, § 103). 결정을 내릴 때는 투명해야 하고 민족 출신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ibid.*, § 89;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82). 마지막으로, 그러한 조치가 로마족 아동이 처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반 학교의

일원이 되어 다수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대신 어려움을 가중하고 뒤따르는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 207).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는 민족 간 분리에 대처하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적극적 의무가 있다(*La vida and Others v. Greece*, 2013, § 73; *Elmazov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2, §§ 77–78; *Szolcsán v. Hungary*, 2023, §§ 55–59).

4. 개인의 특성 또는 “상황”

63. *Moraru v. Romania*, 2022, §§ 42–58 사건에서 당시 국방부령으로 정해진 키와 몸무게 기준에 미달하는 여성에게 군의학교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제1의정서 제2조와 공동으로 제14조 위반이었다. 청구인의 체격은 제14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의 대략적인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 또는 “상황”을 나타내는 유전적 특징이다. 청구인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 있는 키와 몸무게인 여성 후보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는 청구인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음). 루마니아 당국은 입법부가 선택한 기준(후보자의 최소 체격 포함)과 그러한 제한의 정당성(후보자별 강점을 판단할 필요성)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루마니아 법원은 청구인이 강조한 대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Kalliri*² 판결을 유의미하게 다루지 않았고 그 파급효과를 검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선발 기준에서 신체 측정 요건이 삭제되어 청구인이 원하는 군사 교육 기관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입학 과정에서 겪었던 불이익이 소급하여 제거되지는 않았다.

III. 부모의 권리 존중

제1의정서 제2조(교육을 받을 권리) 두 번째 문장

“... 국가는 교육 및 교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에 일치하는 교육 및 교수를 확보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HUDOC 주제어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존중(P1-2) – 부모의 철학적 신념에 대한 존중(P1-2)

A. 범위

64. 자신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을 존중받을 부모의 권리는 교육을 받을 기본 권리에 접목되어 있다. 즉, 부모는 자신의 신념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을 자녀의 권리를 거부할 수 없다(*Konrad and Others v. Germany* (dec.), 2006).

65. “부모”라는 용어는 재판소가 폭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에 국한되지 않고 최소한 조부모는 포함할 수 있다(*Lee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반대로, 교육을

² *Ypourgos Esoterikon and Ypourgos Ethnikis paideias kai Thriskevmaton v. Maria-Eleni Kalliri*, case no. C-409/16, EU:C:2017:767, 2017년 10월 18일(*Kalliri*).

받는 자녀는 제1의정서 제2조 제2문으로 부모에게 보장하는 권리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Eriksson v. Sweden*, 1989, § 93).

66. “존중한다”는 단어는 “인정한다” 또는 “고려된다”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주로 수동적인 보장이지만 능동적인 국가의 의무도 일부 내포한다(*Campbell and Cosans v. the United Kingdom*, 1982, § 37). “신념”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볼 때 “의견”과 “아이디어”라는 용어와 동의어가 아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 진지성, 밀착성, 중요성이 있는 견해의 표시이다(*Valsamis v. Greece*, 1996, §§ 25 및 27).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 체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철학적 신념의 범위에 속한다(*Campbell and Cosans v. the United Kingdom*, 1982, § 36).

67. 제1의정서 제2조는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 적용된다. 따라서 성교육과 윤리에도 제1의정서 제2조를 적용한다(*Jimenez Alonso and Jimenez Merino v. Spain*; *Dojan and Others v. Germany* (dec.), 2011; *Appel-Irrgang and Others v. Germany*, 2009).

68. 또한 이 조항은 교습 내용과 교습 제공 방식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제1의정서 제2조는 휴일에 학교 경내 밖에서 행진할 의무에도 적용된다. 재판소는 어기면 정학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제한된 시간이라 하여도 그러한 행사 참여를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였다. 다만 국가 행사를 그런 식으로 기념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화주의적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며, 일부 행진에 군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행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학생에게 부과된 의무가 자녀를 계몽하고 조언하거나 부모의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에 부합하는 길로 자녀를 인도할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았다(*Efstratiou v. Greece*, 1996, § 32; *Valsamis v. Greece*, 1996, § 31).

69. 교육과정의 설정과 계획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권한에 속하며(*Valsamis v. Greece*, 1996, § 28), 교육과정에 종교적이거나 철학적 성격의 정보나 지식이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Kjeldsen, Busk Madsen and Pedersen v. Denmark*, § 53).

70. *Abdi Ibrahim v. Norway* [GC], 2021 (§§ 138–139) 사건에서 재판소는 과거에 협약 기관이 협약 제8조에 따른 청원 외에도 위탁가정 선택에 관한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른 청원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Olsson v Sweden (no. 1)*, 1988 (§§ 95–9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원에 근거가 없으므로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Tennenbaum v. Sweden* (dec.), 1993 및 *X. v. the United Kingdom*, 1997 사건에서 입양 조치에 대해 유사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협약 기관은 당국이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라 부모의 권리를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확인한 것 외에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조항에 따라 검토된 대부분의 사건과 재판소 판례에서 발전된 원칙은 제도화된 교육 및 교수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Abdi Ibrahim v. Norway [GC], 2021 (§ 139) 사건에서 대재판부는 당초 소재판부가 심리적격이라고 선언한 청원을 청구인이 재판소에 제기하면서 협약 제9조에만 의거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청구인의 친권 철회 및 위탁부모의 입양 승인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B. 면제 가능성

71. 부모는 자녀의 의무교육을 가정에서 실시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에 기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초등학교 의무 취학과 관련하여 체약국 간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의무교육을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국가도 있고,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출석을 의무로 규정한 국가도 있다. 그 결과, 재판소는 가정에서 교육해도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 일원이 되는 것도 초등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는 가정 교육으로는 그만큼 달성될 수 없다는 견해는 국가의 인정 범위 내에 있음을 수용하였다. 동일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해 별도의 철학적 신념에 기반한 평행사회(parallel society)의 출현은 피하면서도 소수자를 사회에 통합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체약국 법원의 논리가 민주주의에서 다원주의의 중요성에 관한 재판소 판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의무교육을 가정에서 시행하는 것을 거부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Konrad and Others v. Germany* (dec.), 2006).

72. 부모의 철학적 신념을 존중하려면 학생이 특정 수업에서 면제될 수 있어야 한다. *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2007, (§§ 95–100) 사건에서는 학부모인 청구인이 공립 초등학교 수업인 “기독교, 종교 및 철학”에서 자녀의 수업참여를 면제받게 할 수 없어서 제1의정서 제2조가 위반되었다. 다른 종교 및 철학 수업과 대조적으로 기독교 수업에서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적용되었다. 부분 면제가 가능한 것은 확실했지만, 이는 해당 활동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일부 면제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과 지식의 구분은 실제로 운영하기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부분 면제를 받을 권리의 실효성을 상당히 떨어뜨렸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 면제 제도는 해당 부모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과 더불어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러한 요청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았다.

73. 그러나 면제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다. *Dojan and Others v. Germany* (dec.), 2011 사건에서 의무 성교육 수업이 초등학생 교육과정에 있었다. 학교는 아동 성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극 워크숍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의 전통으로 매년 카니발 축제를 개최하였지만, 참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활동이 있었다. 청구인들은 자녀가 상기 언급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결과 벌금이 부과되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한 두 명은 수감되었다. 재판소는 문제가 된 성교육 수업이 기본법률 조항과 그에 따른 지침 및 교육과정에 따라 생식, 피임, 임신, 출산에 관한 지식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현재의 과학·교육 표준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극 워크숍은 다원주의와 객관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문제가 된 카니발 행사에는 종교적 활동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여하튼 자녀들은 대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가 종교적 신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수업 및 활동을 자녀가 면제받지 못하도록 거부한 것은 제1의정서 제2조의 위반이 아니었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소는 면제 가능성이 없는 의무적인 세속 윤리 수업의 포함 여부는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인정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견해를 보였다(*Appel-Irgang and Others v. Germany*, 2009).

74. 또한 재판소는 다른 종파의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시립학교에서 학부모가 교리 주입의 목적 없이 주최한 일회성의 단시간 종교의식에 어린 학생이 단순히 참석했을 뿐인 경우, 해당 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Perovy v. Russia*, 2020).

75. 개인의 이익은 때로 집단의 이익보다 하위에 놓이기도 하지만, 소수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고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Valsamis v. Greece*, 1996, § 27). 예를 들어 재판소는 학교 교육과정이 이슬람교와 그 외 다른 종교·철학에 대한 다양한 소수 해석보다는 튀르키예의 대다수 인구가 실천하고 해석하는 이슬람교를 더 강조한다는 사실 자체가 교리 주입으로 해석되어 다원주의와 객관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니파 이슬람 개념과 관련된 알레비 신앙의 특수성에 비추어, 해당 학부모는 “종교 문화 및 윤리 지식” 수업을 가르치는 방식 때문에 자녀가 학교와 자신의 가치관 중 어디에 충실해야 하는지 갈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였다. 따라서 상황이 이렇다면 적절하게 면제될 수 있어야 한다(*Mansur Yalçın and Others v. Turkey*, 2014, §§ 71–75).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을 학교 당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는 특히 면제에 관한 분명한

문구가 부재하면 요청을 거절할 선택권이 학교 당국에 있기 때문에 신념의 자유를 존중받기에는 부적절한 수단이었다(*Hasan and Eylem Zengin v. Turkey*, 2007, §§ 75–76). *Papageorgiou and Others v. Greece*, 2019 (§ 88) 사건에서 부모인 청구인들은 신념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자녀가 정교회 기독교도가 아니라서 종교 교육 수업에서 면제된다고 확인하는 엄숙한 선언서에 교사가 부서(副署)하여 제출해야 했다는 사실은 청구인들과 자녀에게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였다.

C.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

76. 제1의정서 제2조 제2문은 국가가 교리 주입을 목적으로 추구하면 부모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Kjeldsen, Busk Madsen and Pedersen v. Denmark*, 1976, § 53). 그러나 재판소는 공립 학교 교실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제1의정서 제2조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기도 하였다. 재판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를 가리키는 십자가의 존재를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학교 환경에서 피청구국의 다수 종교에 우월한 가시성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피청구국의 교리 주입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벽에 걸린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상징이며, 훈시나 종교 활동 참여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학생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교내 십자가의 존재가 기독교의 가시성을 높이는 효과는 기독교에 대한 의무 교육과 관련이 없고 국가가 학교 환경을 다른 종교에도 평등하게 개방함에 따라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아야 했다(*Lautsi and Others v. Italy* [GC], 2011, §§ 71–76).

77. 마지막으로 국가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러한 표명이 과시가 되어 압력과 배제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히잡을 쓴 어린 여학생의 등교를 거부한 것은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에 부합하는 길로 자녀를 인도할 부모의 권리로 박탈하지 않았고 거부 자체가 예측 가능하고 비례적이었기 때문에 제1의정서 제2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Köse and Others v. Turkey*, 2006). 고등교육 상황에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Leyla Şahin v. Turkey* [GC], 2005).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44조의 의미에 따라 최종이 아닌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이어지는 대재판부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ies), 위원회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또는 둘 중 하나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A—

Abdi Ibrahim v. Norway [GC], no. 15379/16, 10 December 2021

Ali v. the United Kingdom, no. 40385/06, 11 January 2011

Altinay v. Turkey, no. 37222/04, 9 July 2013

Appel-Irrgang and Others v. Germany (dec.), no. 45216/07, ECHR 2009

Arslan v. Turkey (dec.), no. 31320/02, 1 June 2006

—C—

C.P.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00/11, 6 September 2016

Çam v. Turkey, no. 51500/08, 23 February 2016

Campbell and Cosans v. the United Kingdom, 25 February 1982, Series A no. 48

<http://hudoc.echr.coe.int/eng?i=001-57525>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nos. 43370/04 and 2 others, ECHR 2012

Ciftçi v. Turkey (dec.), no. 71860/01, ECHR 2004-VI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Çölgeçen and Others v. Turkey, nos. 50124/07 and 7 others, 12 December 2017

—D—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no. 57325/00, ECHR 2007-IV
Dabhi v. the United Kingdom, no. 28627/95, Commission decision of 17 January 1997
Dojan and Others v. Germany (dec.), nos. 319/08 and 4 others, 13 September 2011
Dupin v. France (dec.), no. 2282/17, 18 December 2018
Durmaz and Others v. Turkey (dec.), nos. 46506/99 and 3 others, 4 September 2001

—E—

Efstratiou v. Greece,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Elmazov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nos. 11811/20 and 13550/20, 13 December 2022
Enver Şahin v. Turkey, no. 23065/12, 30 January 2018
Epistatu v. Romania, no. 29343/10, 24 September 2013
Eriksson v. Sweden, 22 June 1989, Series A no. 156

—F—

Fayed v. the United Kingdom, 21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4-B
Folgerø and Others v. Norway, no. 15472/02, ECHR 2007-III
Foreign Students v. the United Kingdom, nos. 7671/76 and 14 others, Commission decision of 19 May 1977, Decisions and Reports (DR) 9

—G—

G.L. v. Italy, no. 59751/15, 10 September 2020
Georgiou v. Greece (dec.), no. 45138/98, 13 January 2000
Golder v. the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75, Series A no. 18
Graeme v. the United Kingdom, no. 13887/88, Commission decision of 5 February 1990, DR 64

—H—

Hasan and Eylem Zengin v. Turkey, no. 1448/04, 9 October 2007
Horváth and Kiss v. Hungary, no. 11146/11, 29 January 2013

—I—

İrfan Temel and Others v. Turkey, no. 36458/02, 3 March 2009

—J—

Jaramillo v. the United Kingdom, no. 24865/94, Commission decision of 23 October 1995

—K—

Kalkanlı v. Turkey (dec.), no. 2600/04, 13 January 2009

Kılıç v. Turkey (dec.), 29601/05, 5 March 2019

Kjeldsen, Busk Madsen and Pedersen v. Denmark, 7 December 1976, Series A no. 23

Klerks v. the Netherlands, no. 25212/94, Commission decision of 4 July 1995, DR 82

Kök v. Turkey, no. 1855/02, 19 October 2006

Köse and Others v. Turkey (dec.), no. 26625/02, ECHR 2006-II

Konrad v. Germany (dec.), no. 35504/03, ECHR 2006-XIII

Koureas and Others v. Greece, no. 30030/15, 18 January 2018

—L—

Lautsi and Others v. Italy [GC], no. 30814/06, ECHR 2011

Lavida and Others v. Greece, no. 7973/10, 30 May 2013

Lee v. the United Kingdom [GC], no. 25289/94, 18 January 2001

Leyla Şahin v. Turkey [GC], no. 44774/98, ECHR 2005-XI

—M—

Mansur Yalçın and Others v. Turkey, no. 21163/11, 16 September 2014

McIntyre v. the United Kingdom, no. 29046/95, Commission decision of 21 October 1998

Mehmet Reşit Arslan and Orhan Bingöl v. Turkey, nos. 47121/06 and 2 others, 18 June 2019

Memlika v. Greece, no. 37991/12, 6 October 2015

Moraru v. Romania, no. 64480/19, 8 November 2022

Mürsel Eren v. Turkey, no. 60856/00, ECHR 2006-II

—O—

O'Keeffe v. Ireland [GC], no. 35810/09, ECHR 2014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no. 15766/03, ECHR 2010

Osmanoğlu and Kocabas v. Switzerland, no. 29086/12, 10 January 2017

—P—

Papageorgiou and Others v. Greece, nos. 4762/18 and 6140/18, 31 October 2019

Perovy v. Russia, no. 47429/09, 20 October 2020

Ponomaryovi v. Bulgaria, no. 5335/05, ECHR 2011

—S—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no. 32526/05, 5 June 2008

Sanlisoy v. Turkey (dec.), no. 77023/12, 8 November 2016

Sorabjee v. the United Kingdom, no. 23938/94, Commission decision of 23 October 1995

Sulak v. Turkey, no. 24515/94, Commission decision of 17 January 1996, DR 84

Szolcsán v. Hungary, no. 24408/16, 30 March 2023

—T—

Tarantino and Others v. Italy, nos. 25851/09 and 2 others, ECHR 2013

Telek v. Türkiye, nos. 66763/17 and 2 others, 21 March 2023

Tennenbaum v. Sweden (dec.), no. 16031/90, 3 May 1993

T.H. v. Bulgaria, no. 46519/20, 11 April 2023

Timishev v. Russia, nos. 55762/00 and 55974/00, ECHR 2005–XII

—U—

Uzun v. Turkey (dec.), no. 37866/18, 10 November 2020

—V—

Valiullina and Others v. Latvia, 56928/19 and 2 others, 14 September 2023

Valsamis v. Greece,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Vavřič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47621/13 and 5 others, 8 April 2021

Velyo Velev v. Bulgaria, no. 16032/07, ECHR 2014

Verein Gemeinsam Lernen v. Austria, no. 23419/94, Commission decision of 6 September 1995, DR 82

—W—

Whitman v. the United Kingdom, no. 13477/87, Commission decision of 4 October 1989

—X—

X. v. Austria, no. 5492/72, Commission decision of 16 July 1973

X. v. the United Kingdom, no. 7626/76, 11 July 1977

X. v. the United Kingdom, no. 8844/80, Commission decision of 9 December 1980, DR 23